

의안번호	2211317
의 퇴 인	홍기원 의원
회 답 일	2025.08.25.
추계번호	25C3657

평화교육 지원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평화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②평화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억 5,000만원, 2030년 14억 6,100만원 등 향후 5년간 70억 2,400만원(연평균 14억 5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평화교육관리위원회 설치(안 제8조)	3.6	3.6	3.6	3.6	3.6	15	3.6
평화교육센터 운영(안 제9조)	1,346	1,373	1,401	1,429	1,457	7,007	1,401
합계	1,350	1,377	1,405	1,433	1,461	7,024	1,405

주: 1.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의 책무)	(제1항)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평화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는 전쟁과 같은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평화와 인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평화교육의 내용이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국가는 비폭력대화 등 평화적인 소통 방식을 확산하여 일상 속 갈등예방 및 사회전반의 평화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항) 국가는 평화교육을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5항) 국가는 평화교육 교재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6조 (평화교육의 추진)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평화교육 연구의 진흥 3. 평화교육 인력의 양성·활용 4. 평화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5. 평화교육에 수반되는 자원 조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교육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 (평화교육주간)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8조 (평화교육관리위원회)	(제1항)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화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화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3.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화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5. 평화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6. 그 밖에 평화교육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 (평화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이하 “평화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2조 (평화교육의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평화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2조 (평화교육의 지원)	(제2항)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의 책무)	×	· 제정안은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화의식을 함양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조를 근거로 평화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조항으로 추계가 어려움
2	안 제6조 (평화교육의 추진)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평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수립, 연구 진흥, 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조에 따라 수행될 업무에 대한 구체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3	안 제7조 (평화교육주간)	×	· 제정안에 따라 평화교육주간이 제정되어 평화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이 편성되는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교육주간 동안 이루어질 사업 내용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움
4	안 제8조 (평화교육관리위원회)	○	
5	안 제9조 (평화교육센터의 지정 등)	○	
6	안 제12조 (평화교육의 지원)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활동 목적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조에 근거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학교·법인의 수, 관련 예산 규모 등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평화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②평화교육센터(이하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안 제9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8조) 위촉위원 수에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하여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추계
 - (안 제9조)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은 제정안의 센터와 유사하게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준용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
 - * [참고자료] 제정안과 「통일교육 지원법 조문 비교」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위촉위원 수에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1,5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
 - (위촉위원 수) 제정안의 규정을 참조하여 구성원 6명 중 3명으로 함¹⁾

1) 안 제8조(평화교육관리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평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학계 및 언론계에서 각각 1명씩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참석 수당)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30만원으로 하되,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1일당 15만원내로 하고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만원내로 편성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최근 5년간 개정된 바 없음
 - － 한편, 동 지침은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원격지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 등을 별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의 횟수) 분기별로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연 4회로 함

[표 2] 평화교육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위촉위원 수(A, 명)	3	3	3	3	3	—	—
참석 수당(B, 만원)	30	30	30	30	30	—	—
회의 횟수(C, 회)	4	4	4	4	4	—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3.6	3.6	3.6	3.6	3.6	15	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센터 지정·운영(안 제9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70억 700만원(연평균 14억 100만원)으로 추계
 - 통일부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10개 권역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 참고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자료지원, 지역통일관 전시, 통일교육 활성화 등 사업을 수행하며 '25년 13억 2,000만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됨
 - 본 추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되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표 3] 센터 지정·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센터 지정·운영(안 제9조)	1,346	1,373	1,401	1,429	1,457	7,007	1,401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 시행 후 구체적인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제정안과 「통일교육 지원법 조문 비교」

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평화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이하 “평화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화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평화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제정안 및 국가법령정보센터